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정의당을 대표해 작년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유족분들께 연말까지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새해를 이 차디찬 바닥에 맞이하게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농성장과 국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더 살펴 주시고 더 힘을 내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별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위 논의 결과에 대한 입장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탕, 재해살인방조

- ▶ 5인 미만 사업장 ‘생명안전 경시하는 중대재해차별법’,
모든 사업 적용하는 산업안전법 적용범위보다 후퇴
- ▶ 중대재해 책임 ‘안전보건업무담당 이사’ 사내하청에 전가하는 꼴
- ▶ 발주처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등 경영책임자 책임의무 명시 필요
- ▶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제외

- (중대산업재해, 5인 미만 사업장 개인사업주 적용 제외)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94명임(전체 2020명).
-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여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비중은 96,687명 32.1%이고, 최근 전체 사망자 6,119명 중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비중은 1,389명인 22.7%임.
- 전체 사업체 410만여개소 중 5인 미만 사업체는 327만여개소(79.1%), 이중 영리법인은 43만개소로 이를 제하면 284만개소 69.1%임. (2018년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사업장의 69.1%를 포기하겠다는 것임
- 현행 산안법은 모든 사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위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 임.

* 법안소위 의결(안)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인 미만 원하청 및 자체사업 76건 14.9%, 이중 건설업 55건 72.4%)
2019년 전체 중대재해 510건 중 5인 미만 자체사업은 64건 12.5%, 원청·하청 모두 5인 미만 사업은 12건 2.5%이나 이 법 적용이 안 됨.

* 2019년 1월~11월 재해조사의견서 분석 결과(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체 중대재해건수	5인미만 자체사업 중대재해	하청이 5인미만 인경우	원청 및 하청 5인미만 사업
510건	64건(12.5%)	110건(21.6%)	12건(2.4%)
건설업	44건	52건	11건

* 2017년~2019년 재해 및 사망자수 현황(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구분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재해자수	301,395	96,687	46,901	68,574	24,164	21,007	20,888	6,586	6,414	10,174
	100%	32.1%	15.6%	22.8%	8.0%	7.0%	6.9%	2.2%	2.1%	3.4%
사망자수	6,119	1,389	668	1,138	483	540	780	355	488	278
	100%	22.7%	10.9%	18.6%	7.9%	8.8%	12.7%	5.8%	8.0%	4.5%

* 2018년말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규모	전 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사업체수	4,103,172	3,274,152	491,200	186,654	100,961	31,235	14,907	2,092	1,275	696
	100.0% (누적)	79.8%	12.0% (91.8%)	4.5% (96.3%)	2.5% (98.8%)	0.8% (99.5%)	0.4% (99.9%)	0.1% (100%)	0.0%	0.0%

○ (중대시민재해)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도 제외(전체 179,256개소 중 1,000㎡ 이상인 4,492개소 2.5%만 적용)

□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전국사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체 98.8%

○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시행유예는 전체 사업장 중 1.2%만 적용, 50인 미만 전체 재해 중 76.6%(사망자 61.6%) 유예 하는 것(2019년 기준)

* 2019년도 재해 및 사망자수 현황(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계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재해자수	109,242	34,522	15,872	24,629	8,655	7,825	8,263	2,645	2,710	4,121
		31.6%	14.5%	22.5%	7.9%	7.2%	7.6%	2.4%	2.5%	3.8%
	누적		46.1%	68.7%	76.6%	83.8%	91.3%	93.7%	96.2%	100.0%
사망자수	2,020	494	221	380	150	180	240	113	158	84
		24.5%	10.9%	18.8%	7.4%	8.9%	11.9%	5.6%	7.8%	4.2%
	누적		35.4%	54.2%	61.6%	70.5%	82.4%	88.0%	95.8%	100.0%

*** 법안소위 의결(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 50억 미만이 공사)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영책임자 책임 부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재해예방을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임. 안전보건 업무담당 이사는 중대재해발생시 책임을 사내하청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음.

*** 법안소위 합의(안)**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실상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처벌이 미흡해 비용이 생명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기업문화가 형성 됨.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임

-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금지 및 일터괴롭힘 예방에 대한 규정 필요) ‘조치’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간접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버림.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 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산안법」에서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공법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 전체 692건 중 건설업이 386건 56%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안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2020년 1월1일~12월21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신고접수현황**

	전체 현황	건설업 현황	전체대비 건설업 비중
중대재해 건수	692건	386건	56%
중대재해 사망자	740명	426명	58%
중대재해 부상자	71명	39명	55%

- 따라서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 등의 구체적 의무와 경영책임자 ‘조치이행’ 의무와 같이 직접적인 의무로 변경해야 의무와 책임이 분명해질 것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법 변경을 금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 사고와 연결지어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참고) 법안소위 합의(안)**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 처벌에 있어 하한형 수준이 낮거나 상한형으로 변경 △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 삭제 △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 삭제 △ 법인 처벌에 있어 매출액 등 기준 벌금 규정 삭제 △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상한형을 규정하고 입증책임 전환 미반영 등 전반적으로 퇴보하였고,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법안 심사가 주를 이루었음